

대전지방법원 2021. 1. 26 선고 2020나112865 판결 [구상금등 청구의 소]

재판경과

대전지방법원 2021. 1. 26 선고 2020나112865 판결

대전지방법원 2020. 5. 7 선고 2019가단115805 판결

전문

원고,피항소인 신용보증기금

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나은

담당변호사 석윤수

피고,항소인 E

소송대리인 변호사 이종찬

소송복대리인 변호사 진현경

변론 종결 2020. 12. 8

판결선 고 2021. 1. 26

제1심 판결 대전지방법원 2020. 5. 7. 선고 2019가단115805 판결

주문

1.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.

2.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.

청 구 취 지 와 항 소 취 지

1. 청구취지

제 1심공동 피고 B와 피고 사이에 별 지목록 제 3내지 5항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18. 9. 4. 체결된 매매계약을 330,582,505원의 한도 내에서 취소한다.

피고는 원고에게 330, 582, 505원과 이에 대하여 이 사건 판결 확정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 연 5% 의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.

2. 항소취지

제1심 판결 중 피고에 대한 부분을 취소하고, 원고의 피고에 대한 청구를 기각한다.

이 유

1. 제1심 판결의 인용

피고가 주장하는 항소이유와 당심에서 추가로 제출한 증거를 더하여 보더라도 제 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다.

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제1심 판결 이유 제 11쪽 15행에 이어 다음 내용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의 해당부분 기재와 같다(적용법조: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).

[추가하는 부분] ④ 피고 A은 2017 년 이전부터 운송계약을 체결하고 피고 A의 제품을 운반한 피고 D에 대하여 2017 년 운송료 20, 174, 000원을 지급하지 못하였고, 2018. 5.경부터는 피고D에 운송료를 전혀 지급하지 못하였다.

또한 피고 A은 2018. 9. 부터 근로자 AF, AG등에게 급여를 지급하지 못하였다(인정근거: 갑 33호증, 을라 1~5호증, 변론 전체의 취지).

이처럼 피고 A은 이 사건 매매계약이 체결된 2018 . 9. 4. 경 이미 회사의 운영에필수적인 임금과

운송료도 지급하지 못하고 있었으므로,피고 A의 신용 보증사고가 발생할 고도의 개연성이 있었다고 보아야 한다.”

2. 결론

제1심 판결은 정당하다.

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.

재판장 판사 이태영판사 김선용판사 이경희

별지